의안번호	2205640
의 뢰 인	이정헌의원
회 답 일	2025.1.6.
추계번호	24D5151

특수임무수행자 보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【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】

국회예산정책처
National Assembly Budget Office

Ⅰ. 재정수반요인

연번	조·항 (조제목)	주요내용	비고
1	안 제10조제2항 (보상금등의 신청)	보상금 등의 지급신청 기간을 제한하는 규정 삭제	의무규정

Ⅱ. 미첨부 근거규정 및 상세사유

1. 근거 규정

연번	조·항(조제목)	미첨부근거규정
1	안 제10조제2항 (보상금등의 신청)	• 제3호: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·권고적인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

2. 상세사유

❑ 보상금등의 지급신청 기간을 제한하는 규정을 삭제(안 제10조제2항)

○ 개정안은 보상금등[1]의 지급신청 기간을 제한하는 규정을 삭제하여, 그동안 지급신청을 하지 못한 특수임무수행자 및 그 유족에게 보상금등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으로 추가재정소요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됨

– 국방부 자료에 따르면, 1인당 보상금액은 특수임무수행자의 경우 평균 1억 8,000만원, 교육훈련자의 경우 평균 약 1억원 수준임

❑ 국방부 자료에 따르면, 특수임무수행자 보상 신청 접수는 2005년 2월부터 시작되어 6차에 걸쳐 접수를 받아 2019년 11월에 종료되었음

1) 보상금, 특별공로금, 공로금 및 특별위로금을 의미함

[표 1] 특수임무수행자 보상 신청 접수기간

구 분	접수시기	총계	신규신청	재신청인원	접수기간
1차	2005. 2. 1. ~ 2005. 8. 1.	5,638	5,638	-	6
2차	2006.11. 1. ~ 2007.10.31.	1,262	1,261	1	12
3차	2009. 4. 1. ~ 2011.10.31.	1,650	1,632	18	31
4차	2014. 5. 9. ~ 2014.11.10.	463	395	68	6
5차	2016. 1.19. ~ 2016. 4.19.	1,293	247	1,046	3
6차	2019. 5. 24. ~ 2019. 11. 25.	738	513	225	6

자료: 국방부

○ 2020~2024년 보상인원은 287명이며, 지급금액은 306.9억원임

[표 2] 특수임무수행자 보상인원 및 보상금등의 지급 현황

(단위: 명, 억원)

구 분	2020	2021	2022	2023	2024	합계
보상인원	92	161	34	0	0	287
지급금액	122	159	22.4	2.3	1.2	306.9

자료: 국방부

❑ 국방부에 따르면, 개정안에 따른 보상금 지급 금액은 최대 보상금 지급 대상으로 확인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보상금신청을 하지 않은 유가족에게 지급해야 할 보상금과 미신청자 신청에 따른 보상금 등 총 2,707억 3,000만원으로 추정됨

[표 3] 개정안에 따른 특수임무수행자 보상금 추정

(단위: 명, 억원)

	인원	단가	지급비율	보상금
미신청유족 보상금	974	0.27		265.6
미신청자	2,654	1.15	0.8	2,441.7
합계	3,628	-	-	2,707.3

주: 미신청자 지급비율은 형제·자매에게 지급되는 것으로 가정하여 80%를 적용함
자료: 국방부

○ 미신청유족 보상금은 유족 중 일부가 보상금을 신청하여 보상금 지급대상으로 확인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보상금 신청을 하지 않은 유족(이하 “미신청유족”이라 함) 974명에 대한 보상금 지급액이 265.6억원임

○ 또한, 국방부에 따르면, 법률안 제정 후 보상금을 한번도 신청하지 않은 5,548명에 대해 보상지원단의 자체 조사결과, 북한연고자, 주소지 등 대상 불특정자 1,775명을 제외한 3,773명이 확인되었으며, 이 중 2,654명에

대한 자료 확인 결과 보상대상자인 것으로 추정됨

❑ 이에 더하여, 보상기간 연장에 따른 운영비가 연간 4.62억원(2020년 연간 운영비 기준) 소요될 것으로 추정

○ 위원회 안건심사수수료, 재판소송비, 추모 행사비 등 2.31억원, 근로자(2명) 급여, 퇴직금 등 1.15억원, 장비 유지비, 지원단 운영비, 여비, 업무추진비 등 1.16억원임

❑ 다만, 국방부가 판단한 보상대상자 2,654명 중 향후 신청인원 및 재신청인원 비율, 신청 및 재신청인원 중 인용비율, 인용인원 및 미신청 유족 중에 보상금등을 실제 수령할 인원 등을 현 시점에서 합리적으로 예측하기 어려움

Ⅲ. 부대의견

❑ 없음

Ⅳ. 작성자

❑ 성명

국회예산정책처	분석관	과장
행정비용추계과	전수연	김안나

❑ 대표연락처

성명	전화번호	이메일 주소
전수연	02-6788-4667	syjeon@assembly.go.kr